

## 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」 시행 공고(1차)
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「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29일  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 1. 사업 목적

-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

### 2. 지원대상 및 내용

#### (1) 지원대상 및 금액

##### ① 공통요건

- (사업체)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
- (매출액) 매출액이 소기업\*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
  - \* '20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: 10억원, 도소매: 50, 제조: 120 등)
  - \*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
  -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
-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'21. 02. 28. 이전
- (영업중)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  - \*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

**【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】**

개업 시기 <sup>①</sup>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
		기준	비교
~'19년말	'19년 또는 '20년 신고매출액	'19년 신고매출액	'20년 신고매출액
'20.1~11월	'20년 신고매출액 또는 '20.9월 <sup>②</sup> ~ '21.1월 월평균 매출액	'20.9월 <sup>②</sup> ~ 11월 월평균 매출액	'20.12월 ~ '21.1월 월평균 매출액
'20.12월~'21.2월	개업월 ~ '21.3월 월평균 매출액 <sup>③</sup>	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	

①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(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) 환산하여 적용  
(예 :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→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)

② '20.9월~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

③ 신용·체크카드 결제액, 현금영수증 발급액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

※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

**②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**

**【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】**

구 분	①집합금지		② 영업 제한	③일반업종			
	①-1지속	①-2완화		③-1 경영위기 (매출 20%이상 감소 업종)			③-2 매출감소
기준	6주 이상	6주 미만	영업제한	60% 이상	40% 이상 60% ~ 미만	20% 이상 40% ~ 미만	-
매출액 요건	소기업	소기업	소기업& 매출감소	소기업& 매출감소			매출 10억원 이하 & 매출감소
지원금액	500만원	400만원	300만원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	100만원

**① (집합금지) 중대본·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\*된 소기업**

\*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·지자체가 '20.11.24.~'21.2.14.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

① (지속) '20.11.24 ~ '21.2.14, 총 12주 중 **6주 이상 집합금지** 500만원

② (완화) '20.11.24 ~ '21.2.14, 총 12주 중 **6주 미만 집합금지** 400만원

**【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(시설)】**

구 분	수도권	비수도권
집합금지 (지속)	유흥업소(5종), 홀덤펍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스탠딩공연장	유흥업소(5종), 홀덤펍
집합금지 (완화)	실외겨울스포츠시설, 파티룸 학원·교습소,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	실외겨울스포츠시설, 파티룸

\*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,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
\*\* 유흥업소(5종):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

② **(영업제한) 중대본·지자체의 방역조치\*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'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** 300만원

\*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·지자체가 20.11.24.~'21.2.14.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

-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

\* 예) ① 21시 ~ 05시까지 영업금지, ② 호텔 객실 50% 미만 영업

**< 영업제한 적용 업종(시설) 예시 >**

구 분	수도권	비수도권
<b>영업제한</b>	식당·카페, 숙박업 이·미용업, PC방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(300㎡이상)	식당·카페, 숙박업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,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

\*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,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
③ **(일반업종) 중대본·지자체의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, 소기업 중 '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**

① **(경영위기) 매출 감소 20%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**

200만원  
 250만원  
 300만원

-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'19년 대비 '20년에 20% 이상 감소한 "10개 분야 112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"(⇒ 붙임)
-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(⇒ 붙임)
  - 1) 매출감소율 20~40%: 200만원, 2) 40~60%: 250만원, 3) 60% 이상 300만원

② **(매출감소) '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(연매출 10억원 이하)** 100만원

## [2] 지급 방식

- ① **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: 4.1일(목)부터 신청 가능**
  - (지급 원칙) 1인(법인 포함)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
  - (세부 지급방식)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,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%, 50%, 30%, 20% 적용
- ② **공동대표 운영 시 :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**
  -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
\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
  -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
- ③ **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**
  -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(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)

## [3] 지원제외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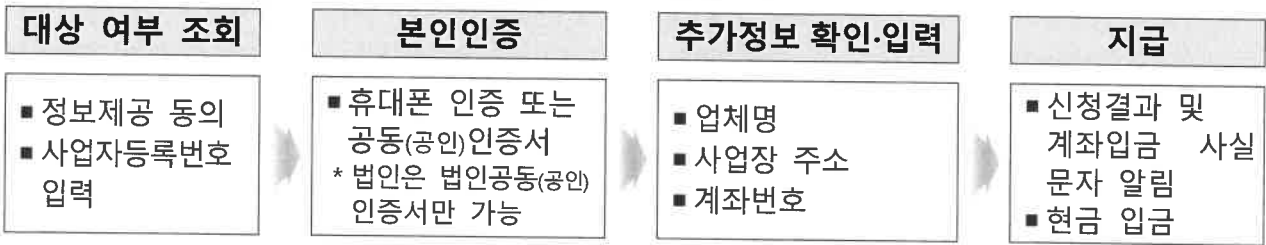
-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·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 
\* 단, 유흥주점, 콜라텍은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
-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
- '21.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\*을 지원받은 경우  
\*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
- 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
\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
- 국세청에 휴·폐업 신고를 했거나,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\*할 수 있는 경우  
\* '19년 연매출액 '0원', '20년 연매출액 '0원'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
-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

### 3. 지원방법 및 절차

#### ① 신속지급

- 신청기간 : '21. 3. 29(월) 06:00 ~
  - 원활한 신청을 위해 3.29(월)~30(화)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\*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(3.31(수)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)
  - \* 3.29(월) 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, 3.30(화) : 끝자리 짝수
- ※ 단,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(4일차)부터 신청 가능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  - ① 포털사이트에서 “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(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)”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“버팀목자금플러스.kr” 입력

#### 【온라인 신청절차】



#### 【참고 : 신속지급 대상자(DB) 추가 계획】 \*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

- 일반업종 중 '경영위기' 유형에 해당,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
- 일반업종 중 '매출감소' 유형에 해당되나, '20.12.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
-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

#### ② 확인지급

- 신청기간 : '21년 4월 하순 경 \*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
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원칙,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\*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 시, 소진공에서 확인·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
  - \* 증빙서류 : 공동대표 사업체(타 대표 위임장), 사회적기업·사회적협동조합·소비자생협 등(설립인증서),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(법적 대리인 위임장), 특고·프리랜서 소상공인(4차 긴급지원 반납확인서),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

#### ③ 이의신청 : '21년 5월 하순 경 \*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

- 지원대상자가 아님(부지급)을 통보받은 경우, 온라인으로 이의신청
  - \*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,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(개별증빙 불인정)

#### 4. 유의사항
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, 중복수급 · 부정수급 ·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
  -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
  -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
- \*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

#### 5. 신청 문의

- 전화 문의 :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
☎ 1811-7500 (평일 09 ~ 18시 운영)
-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[www.버팀목자금플러스.kr](http://www.버팀목자금플러스.kr)) - “채팅상담”  
또는 “[버팀목자금플러스114.kr](http://버팀목자금플러스114.kr)” (평일 09 ~ 20시 운영)

# 붙임 1

# 소기업 개념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.

## 【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】

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매출액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**붙임 2**

**집합금지, 영업제한업종 현황**

구분	수도권	비수도권
<p><b>집합금지 (지속)</b></p>	<p>1. 실내체육시설 2. 노래연습장 3. 직접판매홍보관 4. 실내스탠딩공연장 5. 홀덤편 6~10. 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감성주점)</p>	<p>1. 홀덤편 2~6. 유흥시설 5종</p>
<p><b>집합금지 (완화)</b></p>	<p>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</p>	<p>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</p>
<p><b>영업제한</b></p>	<p>1. 식당·카페 2. 숙박시설 3. PC방 4. 영화관 5. 놀이공원·워터파크 6. 오락실·멀티방 등 7. 이·미용업 8. 독서실·스터디카페 9.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이상) 10. 목욕장업</p>	<p>1. 식당·카페 2. 숙박시설 3. 실내체육시설 4. 학원 5. 노래연습장 6. 실내스탠딩공연장 7. 직접판매홍보관</p>

\*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, 지자체 별도 조치가 있는 경우 상이할 수 있음



**붙임 3**

**경영위기업종 목록**

□ **분야별 경영위기업종**(112개 세세분류업종)

분야	업종	분야	업종	분야	업종
광·공업 (34개)	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	생활용품 (5개)	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	영화·출판·공연 (16개)	기타 인쇄물 출판업
	맥아 및 맥주 제조업		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		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	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		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	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
	모 방적업		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		<b>영화관 운영업</b>
	기타 방적업		화장품,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	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	면직물 직조업	면세점	사진 처리업		
	모직물 직조업	기념품,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	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		
	화학섬유직물 직조업	<b>여행사업</b>	서적 임대업		
	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	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	<b>공연시설 운영업</b>		
	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	박물관 운영업	연극단체		
	한복 제조업	사적지 관리 운영업	무용 및 음악단체		
	모피제품 제조업	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	공연 예술가		
	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	<b>자연공원 운영업</b>	공연 기획업		
	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	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	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		
	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	철도 여객 운송업	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		
	기타 가죽제품 제조업	도시철도 운송업	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		
	신발 부분품 제조업	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	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		
	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	전세버스 운송업	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		
	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	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	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		
	원유 정제처리업	외항 여객 운송업	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		
	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	<b>항만 내 여객 운송업</b>	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		
	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	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	전자 게임장 운영업		
	합금철 제조업	항공 여객 운송업	컴퓨터 게임방 운영업		
	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	항공 화물 운송업	기타 오락장 운영업		
	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	공항 운영업	기원 운영업		
	발광 다이오드 제조업	기타 스포츠 교육기관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		
	전자카드 제조업	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	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		
	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	<b>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</b>	호텔업		
	일차전지 제조업	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	여관업		
	금속 성형기계 제조업	보육시설 운영업	<b>휴양 콘도 운영업</b>		
	산업용 섬유 세척, 염색,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	독서실 운영업	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		
	강선 건조업	유사 의료업	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	
	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	이용업	<b>예식장업</b>		
	항공기용 엔진 제조업	피부 미용업	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		
남자용 겔옷 소매업	기타 미용업	-			
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	<b>욕탕업</b>	-			
기타 의복 소매업	마사지업	-			
신발 소매업	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-			
의류 임대업	산업용 세탁업	-			

\* **녹색** : 감소율 60% 이상(5개)    **황색** : 40% 이상 60% 미만(23개)    기타 : 20% 이상 40% 미만 (84개)